

##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## 필기전형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기전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의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체 장애     | 상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<br>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br>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진단서 (원본)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1~3급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4~6급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<br>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<br>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1~6급                |
| 뇌병변 장애   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<br>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<br>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br>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진단서 (원본)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1~3급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<br>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4~6급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각 장애     | 공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제공<br>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사진단서 (원본)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1~2급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3급 2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3급 1,2호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 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4급 2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4급 2호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4,5급 1호          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 이하 |
|           |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존 6급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청각 장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<br>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| -                      |

\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

\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##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## 면접전형

| 장애유형 및 정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접전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비고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편의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|            |
| 지체 장애     | 상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<br>심하지 않은 장애인 |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<br>· 전담도우미 지원<br>· 관련서식 확대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기존<br>1~6급 |
|           | 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<br>심하지 않은 장애인 |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<br>· 전담도우미 지원<br>·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           |
| 뇌병변 장애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<br>심하지 않은 장애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<br>· 전담도우미 지원<br>· 관련서식 확대 제공<br>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<br>·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           | -    | 기존<br>1~6급 |
| 시각 장애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<br>심하지 않은 장애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<br>· 전담도우미 지원<br>· 관련서식 확대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| 기존<br>1~6급 |
| 청각 장애     |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<br>심하지 않은 장애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<br>·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, 속기사 등)<br>·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<br>· 관련자료 등 확대 제공<br>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| -    | 기존<br>2~6급 |

※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

### [유의사항]

※ 의사진단서 :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**원본만** 인정

\*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[www.hira.or.kr](http://www.hira.or.kr)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
\*\*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
※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예 : 시각장애 :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)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  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※ 편의지원 신청자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관한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